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 방 자 치 단 체 기 금 관 리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단계 재정분권 추진결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투자협약의 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1조의3)
- 다. 시·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조합을 통해 관리·운용하되,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2조 및 제14조)

- 라.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대한 시기와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
- 마. 2단계 재정분권 결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추가로 납입됨에 따라, 해당 용도로 재원을 보전하는 사업 목록에 2단계 전환사업을 추가(안 제13조의2 별표)
- 바.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용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 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치단체 투자계획의 수립 시기·포함사항, 투자계획 협의·자문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3조의6, 제13조의7)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소멸대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3조의8)
- 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투자계획 및 투자협약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연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 협의 및 자문, 법 제29조 투자협약의 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이하 “투자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투자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주거·복지·의료·일자리·문화·산업 등 분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업무 담당자
2. 인구감소·균형발전·지방재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인구감소·균형발전·지방재정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③투자자문단의 협의 및 자문,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인구감소·균형발전·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4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각 1명씩 위촉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인구감소·균형발전·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4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각 1명씩 위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합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전기금”을 “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전기금운용계획”을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으로, “결산보고서”를 “각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을 “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안과 각 기금의”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2. 기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서 매년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3조의6부터 제1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투자계획의 수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 제27조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법 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타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의7(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관계자 회의 개최
2. 제9조의2의 투자자문단 회의 개최
3.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4. 현장 방문,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
5. 그 밖에 협의 및 자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의8(투자협약의 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대상 사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

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투자협약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협약안”이라 한다.)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협약안을 제출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발전기금”을 각각 “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조합회의 의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제13조의2제4항 관련)

1. 소하천 정비
2. 농어업기반 정비
3.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4.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5.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6.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7.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8. 지방하천 정비
9. 산림경영자원 육성
10. 관광지 개발조성
11.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12.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15.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6. 청소년시설 확충
17.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8.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9.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20.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21. 문화특화지역 조성
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23. 문예회관 건립 지원
24.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25.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26.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7.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28. 복합문화시설 조성
29. 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30.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31.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3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33.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34.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3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6. 작은영화관 건립
37.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38. 지역문화행사 지원
39. 지역대표공연예술제
4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41.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42.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지원
43.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44. 마을만들기
45.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46. 농촌다움 복원
47. 농촌현장포럼
48.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49. 농촌 재능나눔
50.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1.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2.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5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54. 생태하천복원(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제외한다)
5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56.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57. 비산먼지저감사업
58. 서식지 외 보전기관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59.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6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61. 생태휴식공간 확대
62.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63.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6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제외한다)
65. 지역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66. 지역 마리나시설 조성
67.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68.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69. 공유수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70.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71.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관련 냉동·냉장시설 지원(클러스터형 사업은 제외한다)
72.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73. 낚시터 환경개선
74.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말한다)
75.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76.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77.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78.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79.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80.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81. 농업인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
82. 농업전문인력 양성(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3. 농가경영개선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4.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5.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86. 숲길조성·관리
87.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88. 유아숲체험원 조성
89. 치유의 숲 조성
90.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91. 지방정원 조성
92.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93. 지역생태숲 조성
94. 산림교육센터 조성
95. 산림복지단지 조성
96. 수목장림 조성
97. 공동체 정원 조성
98.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간선임도 조성은 제외한다)
99.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에 한정한다.)
100. 지방이양사무 지원
10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2. 노인보호구역개선
10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04.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원
10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자체 보조,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에 한정한다.)
106.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107.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지자체별 소비정책 강화사업에 한정한다.)
108. 푸드플랜 운영 지원(안전품질관리에 한정한다.)
109. 유기질비료 지원
11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제외한다.)
11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1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한정한다.)
11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4. 암환자 지원
115. 양로시설 운영 지원

1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7. 노숙인 시설운영
118.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지자체에 한정한다.)
119.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자치단체 지원 중 기초자치단체 지원에 한정한다.)
120.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 제외한다.)
121.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에 한정한다.)
122. 해양관광육성(해양레포츠활성화 사업내 교육프로그램에 한정한다.)
123. 지방이양 항만지원
124.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125. 여객 터미널 운영(지방관리 터미널에 한정한다.)
126.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제외한다.)
127.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28. 위험도로 구조개선
129.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130. 체육진흥시설 지원
131. 주차환경개선 지원
132. 상수도시설 확충 관리(도서지역시수원 개발은 제외한다.)
133.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34.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장비지원에 한정한다.)
135. 자치경찰사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 1호~98호는 2020년부터 이양되는 사업, 99호~126호는 2022년부터 이양되는 사업,
127호~135호는 2023년부터 이양되는 사업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투자계획 및 투자협약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행정안 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심 의위원회와 기초지원계정심의 위원회의 연계,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투자계획 협의 및 자문, 법 제29조 투자협약의 체결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이 하 “투자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투자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 성한다.</u> <u>1.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주거· 복지·의료·일자리·문화· 산업 등 분야의 관계 중앙행 정기관 업무 담당자</u> <u>2. 인구감소·균형발전·지방재 정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u> <u>3.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u>

<신 설>

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인구감소·균형발전·지방재
정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관
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다고 인정되는 자

③투자자문단의 협의 및 자문,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
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다.

제11조의3(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
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촉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
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
이 위촉하는 사람

2. 인구감소·균형발전·지방재

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
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4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
안전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
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각 1명씩 위촉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
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
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
촉하는 사람

2. 인구감소·균형발전·지방재
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
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4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
안전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

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각 1명씩 위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합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u>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u>
제12조(전문기관) ① <u>법 제17조제6항</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12조(전문기관) ① <u>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u> ----- ----- -----.
② <u>조합이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u>	②---- <u>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u> ----- ----- -----.
제13조(<u>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u>) ① <u>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제13조(<u>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u>) ①----- ----- <u>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u> ----- ----- <u>각 기금의 결산보고서</u> -----.
② <u>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u>	②----- --- <u>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안과 각 기금의</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u>발전기금의 계정 구분</u>)	제13조의2(<u>발전기금의 계정 구분</u>)

과 용도)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과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2. 기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서 매년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의6(투자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 제27조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를 거쳐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
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
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
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
리 체계
6. 타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
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 설>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의7(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관계자 회의 개최
2. 제9조의2의 투자자문단 회의 개최
3.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신 설>

4. 현장 방문,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

5. 그 밖에 협의 및 자문에 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의8(투자협약의 체결) ①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
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
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
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
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
성

7. 그 밖에 대상 사업 선정에 필

요한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자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
앙행정기관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에 관한 사
항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
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투자협약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멸대
응투자협약안(이하 “협약안”이
라 한다.)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시·도 지사를 거쳐서 법 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신 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협약안을 제출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

②-----
----- 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

제18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u>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 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의 규약으로 정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연 락 처	(044) 205 - 3705 (044) 205 - 3522